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1530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정형윤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진 담당변호사 박정언

변론 종결2024. 9. 11.

판결 선고2024. 10. 1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날짜' 란 기재 일시에 '입금금액' 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6.과 2011. 12. 14.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이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B 대신 이를 변제하였고, B은 원고에게 136,365,715원 및 그 중 90,782,381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45,422,950원에 대하여는 2018. 5. 8.부터 각 2018. 12. 1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496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다. 위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증여액 합계 202,5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법원의 E조합, F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E조합, G은행,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F은행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거래내역을 B이 피고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어 피고의 E조합, G은행,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B의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운

별지